

(제10-4호) <신설 2017.07.21>

임원 해임(사임)

1. 임원내역	직 위 (상임여부)		업무집행책임자 (상근/비등기)
	성 명		배금영
	임기	시작일	2020.01.01
		만료일	2024.12.31
2. 해임(사임)일			2023.12.08
3. 해임(사임)사유			일신상의 사유
4. 해임(퇴임)후 해당 직위 임원 현황	임원수		3
	사외이사비율(%)		-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-
6. 향후 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			-

기재상의 주의

- * 참고조문 :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,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, 동 시행세칙 제2조
- 주1) 임원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해임 또는 사임한 때 신고한다. 다만, 임기만료 전에 동일임원으로 재선 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주2) "사외이사비율"은 해당직위임원총수에 대한 사외이사총수의 백분율을 기재하되, 해임(사임)자가 사외이사, 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일 경우만 기재한다.
- 주3) 사외이사이면서 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일 경우 '직위'란에 사외이사, 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을 구별하여 별도의 표를 작성한 뒤 두 개의 표를 공시한다.
- 주4)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"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"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5) 개별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사항